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관한 연구

전태영*, 이윤주**

I. 서론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정의와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가족기업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족기업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다. 가족기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거주하면서부터 형성된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오고 있었다. 더구나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은 모두 가족기업이었다는 주장(Aldrich and Cliff, 2003)도 있다(남영호·문성주, 2007).

우리나라에서 가족기업은 비교적 생소한 단어이지만,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해온 어엿한 기업의 한 형태이며, 부의 생성, 고용창출, 그리고 경쟁력 제고와 같은 주요한 공헌과 더불어(Westhead & Cowing, 1998), 한 나라의 안정과 튼튼한 경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Ibrahim & Ellis, 1994)에 이의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일찍이 이러한 가족기업의 막대한 공헌을 깨달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가족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많은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 부정적이다(남영호 2008).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가족기업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기업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 자본시장과 연계된 연구가 회계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계

*) 경상대학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 경상대학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의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 가족기업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소유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적인 소유구조로 인해 정보이용자들은 가족기업의 회계정보가 투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심상규·김창수·허영빈, 2009).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가족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고, 많은 교육기관에서 가족기업센터 혹은 가족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세계 500대 기업의 33%가 가족기업으로 분류되고, 미국의 전체기업 중 80% 이상이 가족기업이며, 미국 전체 GDP의 12%를 차지한다는 연구도 있다(Shanker and Astrachan, 1996). 즉 가족기업은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규모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대규모 기업 역시 가족기업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역시 전체 제조업체의 약 85%가 가족기업에 속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 혹은 민영화된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창업자 혹은 그 후손에 의해 경영되는 가족기업이다(고윤성·백혜원 2010).

가족기업의 장점인 가족구성원의 공유된 가치관과 비전, 일시적인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추구, 투철한 도전정신을 밑바탕으로 한 창업문화, 관료적인 성향이 약하여 빠른 의사결정,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 등은 도외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족(구성원) 간의 치열한 분쟁, 가족과 기업 경계의 애매모호함, 능력과 무관한 입사 혹은 승진 등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네포티즘, 친척들의 감독 문제, 잘못된 승계나 상속으로 인한 불화 등 가족기업의 단점(Davis, 1983 ; Ibrahim and Ellis, 1994 ; Family Enterprise Center, 1998)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었다(남영호·문성주, 2007).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전통기업 혹은 가업승계기업 등 소규모 기업만을 가족기업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족기업이 많으며 가족기업의 업력과 업종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족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여, 그에 따라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다. 가족기업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윤성·백혜원 2010).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비해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많이 홍보되고 그 자체에 대한 인식도 호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실증연구에 의하면 가족기업들은 여전히 가업승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증여세부담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의 정의와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업승계관련 상속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 논하는 가족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가족기업의 정의

가족기업(family business, family-owned business, family controlled enterprise)이란 가족구성원이 기업을 소유하고, 기업의 경영 및 관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 및 통제권을 가지는 조직체이다(Churchill and Hatten, 1987). 가족기업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가 없고 국가 혹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남영호·문성주 2006 ; 남영호·박근서 2006 ; 고윤성·백혜원 2010).

가족기업은 소기업과 동의어도 아니며,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Belak, 2005).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Churchill and Hatten, 1997 ; Gersick etc, 1997), 유럽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 중에서 적어도 60-70%는 가족기업으로 추정된다(Donckdels, 1991 ; 남영호, 2008)).

가족기업은 소유권의 정도, 가족구성원에 의한 관리의 정도, 가족원의 포함과 다음 세대로의 권력이양 정도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이상석·고인곤, 2004).

가족기업에서 관련 능력의 구성요소에 관해 발생한 비평은 성능향상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비평은 근원적인 소비와 가족기업의 정의와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Thomas M. Zellweger·Kimberly A. Eddleston· Franz W. Kellermanns, 2010).

Astrachan et al.(1992)은 가족기업은 기업규모 기준이 아닌 기업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가족이 관련되어 있느냐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가족구성원이 사업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기업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때, 이를 가족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남영호(2002)는 가족구성원이 기업에 대한 전략적 통제권을 가지면서 창업주나 후계자가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최소한 2세대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전형적인 가족기업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가족기업의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부과를 위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기업에서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가족구성원의 주식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남영호·문성주

(2007)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단일 지배기업이 해당기업 소유권을 50% 이상 갖고 있거나 가족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단일 지배가족의 구성원이 2세대 이상인 경우를 가족기업으로 정의하였다(심상규·김창수·허영빈, 2009).

일반적으로 가족기업은 가족구성원이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하는 기업 혹은 가족구성원은 소유만 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한 기업을 말한다. 또한 넓은 의미로 가족기업은 가족이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전략적 방향을 지배하는 기업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계자 또는 복수 세대가 경영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이라 할 수 있다. Westead and Cowling(1998)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가족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단일 지배가족이 해당기업 소유권(ownership)을 50% 이상 갖고 있는지 여부, 둘째, 친인척 집단이 해당기업을 가족기업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셋째, 단일 지배가족 구성원에 의한 경영(management) 여부, 넷째, 기업을 소유한 단일 지배가족 구성원들이 2세대나 혹은 그 이상의 세대로 세대 간 소유권 승계이전을 경험한 기업인지 여부가 기준이다. 즉,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족의 경영참여보다는 소유권이 가족기업구분의 핵심요소이다. 또한 가족기업은 단일 기준보다 위의 4가지 기준을 적당히 혼합한 복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Michael et al.(1997)은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을 경영자의 관심, 조직의 성과, 의사결정, 승계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가족기업은 창업자 혹은 그의 후손들이 경영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은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고 사직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투자를 하며 기업의 일은 직접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이 실패할 경우 그 충격이 매우 크다. 반면 비가족기업은 고용계약에 의해 채용된 일시적인 전문경영자가 짧은 시간 동안 해당기업을 위해 일하므로 일시적인 단기이익을 강조하며, 중간에 사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종업원 개인의 일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이 실패할 경우 개인적인 충격은 가족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언급하였다.

Hill and Snell(1988)은 가족기업은 소유권 집중도가 높아 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hleifer and Vishny(1986)은 포춘 500대 기업의 33%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은 대주주가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식이 다수에 의해 분산되지 않고 특정 몇몇 계층의 대주주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기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장기 투자를 하며, 창업 가족이 지분과 이사회 의 직책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고윤성·백혜원 2010).

최근에 들어와 미국의 Astrachan, etc(2002), 독일의 Klein(2005) 등은 “F-PEC Scale”을 사용하여 가족기업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있다. 이들은 가족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가족으로 보고(family influence), 가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를 권력(power), 경험(experience), 문화(culture)의 3가지로 보고 있다.

가족기업의 정의는 이상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전형적인 가족기업은 최소한

2세대가 기업경영에 관여할 때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기업가(경영자)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기업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남영호·문성주, 2007).

2.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비교

가족기업(family business)과 비가족기업(non-family business)의 비교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Michael 등(1997)은 경영자의 관심, 조직의 성과, 의사결정, 승계 등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고 있다. 가족기업은 창업자 혹은 그의 후손들이 경영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은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여 중간에 그만 둘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다세대에 걸친 장기투자를 하며, 기업의 일은 직접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이 실패할 경우 그 충격이 매우 크다. 한편 비가족기업은 고용계약에 의해 채용된 일시적인 전문경영자가 짧은 시간 동안 해당기업을 위해 일하므로 중간에 사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종업원 개인의 일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이 실패할 경우 개인적인 충격은 별로 없다(남영호·문성주, 2007).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과 차별화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족기업은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의 명예는 곧 가족구성원의 명예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료적인 성향이 약해 빠른 의사결정과 강한 위기 극복 성향을 가지고 있다(Michael et al. 1997 ; 남영호·문성주, 2006). 둘째, 가족기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가족기업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비가족기업에 비해 우수하다(Anderson and Reeb, 2003). 셋째, 가족기업은 복잡한 대리인 문제 및 기업운영의 방향에 있어서 비가족기업과는 다른 형태를 갖는다(Ali et al., 2007).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이러한 차이점은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 중 하나인 세금비용절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세금비용(tax costs)뿐만 아니라 관련된 비세금비용(non-tax costs)도 고려해야 한다(Scholes and Wolfson, 1992).

한국의 기업은 ‘가족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창업 이후 규모가 커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업을 창업가족의 지배하에 두려는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정구현 외, 2008).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및 전쟁을 겪으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한국형 가족기업이다. 따라서 한국형 가족기업은 매우 친밀하고 유대관계가 강한 한국의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기업경영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매우 극대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가족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또한 가족기업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형태인 재벌기업의 모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소유주가 경영을

담당하는 소유경영의 형태가 일반적인 경영형태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자본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상당수의 소액주주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자본시장의 성장에 비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고윤성·백혜원, 2010).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이익을 적게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족기업 회계정보는 현금흐름 예측력이 높고, 회계이익의 주가반응계수도 크게 나타나서 가족기업과 가족기업의 회계정보 유용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상규·김창수·허영빈, 2009).

Hill and Snell(1988)은 가족기업은 소유권 집중도가 높아 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전략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Shleifer and Vishny(1986)에 의하면 기업은 대주주가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식이 다수에 의해 분산되지 않고, 특정 몇몇 계층의 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기업(포춘 500대 기업의 33%)은, 다세대에 걸쳐 장기 투자를 하며, 창업가족이 계속해서 지분과 이사회의 직책도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하여 상이한 대리인 문제를 가진다. 대리인 문제는 크게 소유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와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로 구분된다. 전자를 Type I 대리인 문제라 하고 후자를 Type II 대리인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Ali et al., 2007).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은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욕구에 주목하고, 이익의 극대화라는 공통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김성수·박찬희·김태호, 2006), 경영자와 대리인간의 인식하고 체계적인 분석이다(Royston Greenwood, 2003).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소유자와 경영자의 분리에 의한 대리인 문제는 덜 심각하게 직면하지만, 통제와 비통제 주주간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Tai-Yuan Chan and Suresh Radhakrishnan, 2007).

가족기업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대부분 임원이거나, 누구보다 회사경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Type II 대리인 비용이 크다. Ali et al.(2007)은 미국의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이익의 질이 더욱 높고, 경영자들은 부정적인 정보라도 자발적으로 공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미국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법 등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유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대리인 문제가 보다 심각할 수 있고, 특히 가족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 뚜렷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대리인 문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Type II 대리인 문제가 경영자와 소유주의 분리로 인한 Type I 대리인 문제에 비하여 우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Astrachan(1988)은, 가족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가족기업과 지역사회를 논의할 때 대두되는 문제로는 가족기업의 문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의 일치여부이다. 만약 가족기업의 문화가 지역사회나 인접환경과 일치하면, 지역사회·경제 개발에 공헌하기 적합하며 나아가 최고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Manuel Carlos Vallejo Martos 등, 2007). 특히 Astrachan(1988)은 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문화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진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 인간활동의 본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성 등 5 가지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남영호, 2008).

3. 상속세의 개념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제도이다. 증여 역시 사망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요건을 가짐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를 단일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는 본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형평을 이루고 부의 집중 방지 및 기회균등과 세수증대에 도입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강화방향의 정책이 지배적이었다.

상속·증여세는 조세의 경제적 능률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민간자본의 단순한 세대 및 소유자의 무상 이전을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성장잠재력인 자본을 공공부분으로 이전시켜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지게 하는 조세이기도 하다.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 및 증여취소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왔으나 이러한 세법개정은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 없이 이루어져 납세의무자들의 반발을 유발하여 과세당국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물납은 부동산, 주식 등에 의해 가능하다. 이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및 자본거래 복잡화로 인한 자산보유 형태의 다양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 증가, 창업1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하여 최근 물납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물납제도는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금전(증권, 인지 포함)에 의한 납부에 갈음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상속·증여세와 같이 일시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 많고 현금확보가 어려워 연납제도에 의한 조치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세수입 확보를 위하여 이용된다(박훈 · 김태완, 2006).

4. 가업과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공제의 개념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

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은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음식점업(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는 제외)은 포함된다(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영 제15조 제1항).

가업승계란 광의로는 기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또는 매각(M&A)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가족 또는 타인(전문경영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업승계는 경영공시와 공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대기업보다는 개인기업, 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직면하는 상황이며, 특히 영업성과가 전통적으로 뛰어나면서도 60~70년대에 창업한 1세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영Know-How와 기술수준을 연계하지 못하고 창업자의 후퇴와 더불어 기업이 사멸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상당액을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주식 등을 말한다(영 제15조 제5항).

III.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의 현황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구간과 세율 변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에서 2001년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추가적인 법률 보완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개정하였다. 이후 다시 완전포괄주의로 개정되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과세유형을 허위규정에 예시하는 보완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까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표구간이 상이하였으나 동일한 한계세율에 대한 과세표준은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작았다. 이는 증여가 상속보다 조세비용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1997년부터 과세구간과 세율을 단일화시켰다. 또한 2000년에 일부 과표구간의 조정을 하여 과표가 30억원 초과시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있다.

2. 상속과세의 유형

상속과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위를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여 유산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느냐 또는 상속인을 중심으로 하여 각 상속인별로 취득한 상속재산만으로 하느냐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 상속세제를 취하고 있지만,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각 재산비율에 따라 부여하고 있어, 유산과세형을 중심으로 일부 취득과세형을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유산과세형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특히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에 분할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취득과세형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즉, 상속인 등이 여러 사람일 경우 먼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이와 같이 분할된 각자의 몫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조용근, 2008).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상속세 과세특례

1) 가업상속공제

① 가업상속의 요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영 제15조 제4항).

첫째,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할 경우일 것

둘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일 것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18조 제3항),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8

조 제6항).

② 공제범위

기업의 상속에 있어서는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을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2억원 기준에 있어서도 해당 기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공제범위를 결정한다.

이처럼 현행법은 2008년 12월 26일 법개정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종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피상속인의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억원, 80억원,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③ 사후관리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기업상속공제의 범위는 1997년 이후 계속 확대하여 왔지만, 입법자는 동시에 비교적 엄격한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즉, 특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기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더 이상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받은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제5항).

④ 기업승계와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7조 제1항, 제4항). 그러나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무리하게 자산을 유동화하여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연부연납과 실물자산에 의한 납부인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은 부동산, 주식 등에 의해 가능하다. 이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금융

상품 및 자본거래 복잡화로 인한 자산보유 형태의 다양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 증가, 창업1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하여 최근 물납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연부연납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국채·지방채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제공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71조 제1항).

연부연납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는바, 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의 범위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이다.

그러나 가업상속재산의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을 연부기간의 범위로 한다.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을 연부연납기간의 범위로 한다.

2)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양축·영어 또는 영림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① 피상속인 요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첫째,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거나(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와 서로 연결한 시·군·자치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둘째,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까운 연안의 시·군·자치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까운 연안의 시·군·자치구와 서로 연결한 시·군·자치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요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위 피상속인의 경우와 동일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둘째,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이어야 한다(영 제16조 제3항).

③ 사후관리

영농상속의 경우에도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을 말한다(영 제16조 제4항).

첫째,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둘째,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셋째,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넷째,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다섯째,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여섯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박종수, 2009)

3) 금융자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금융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말한다.

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의의 및 요건

증여세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속세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상속세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지만, 증여세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상속세

와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증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과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 조특령 제27조의6 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30조의5 제11항 준용).

2003. 12. 31. 이전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증여 외에도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으나 증여의제 대상을 열거방식에 의하는 경우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으로 상속세·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증여사례의 경우에 과세여부 및 과세가액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상속·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

상속세는 법인세와 함께 전세계적인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의 대표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 간 상속세 완화(인하 내지 폐지) 경쟁은 법인세에서와 같이 치열하다. 즉, 어느 한 국가가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또 다른 국가도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조세동조화(tax coupling) 현상을 보여준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상당수 국가들은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활성화 저해와 자산의 해외유출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7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단계적 폐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상속·증여세의 최고 법정비율이 50%이지만 유

효세율은 33.1%(2001-2009년 평균)에 머물고 있으며 조세비중 또한 0.51%(2001-2009년 평균)로 매우 미미한 유효세율상속 및 증여세의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대폭적인 완화를 하고장기적으로는 폐지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중에서 상속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1.02%로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미국의 경우도 1% 미만이다.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정부의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단지 부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부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상속·증여세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원천에 대해 이미 소득세 등을 과세한 후에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무상이전될 때 다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 및 증여과세는 소득과세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저축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의 집중억제 또는 부의 출발점의 균등화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목적에 기초한 과중한 상속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의 무상이전을 의제하는 범위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이 가공의 담세력에 세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개별적인 대가가 없는 소득이라고 하여 10%(과세 표준 1억원 이하)에서 최고 50%(과세 표준 30억원권 초과)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이러한 누진적 성격은 균등한 부의 분배를 이룩하고, 부자에 대한 가난한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하기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증여재산 또한 일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증여자가 취득하여 증여하기까지 발생한 자본이득만이 과세되지 않고 모든 가치가 과세되어 과세불평등을 초래한다. 즉, 당초 소유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상속 증여한 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당초 소유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감소하여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가져오고 사망시까지 보유하고 상속하도록 유인을 줌으로써 부동산의 유동성에도 저해를 준다.

또한 이중과세문제의 측면에서 볼 때, 무상이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필요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할 때 이미 그 원천에 대한 소득세 등에 과세한 후에 축적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무상이전될 때 다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 및 증여과세는 단일 원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과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유석, 2009).

5. 주요국의 가업승계관련 상속·증여세제의 현황

최근 세계 각국은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주된 걸림돌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 독일,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 상속과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의 경우 상속 및 증여과세를 이미 폐지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가업승계관련 상속세제의 현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 국

2001년 5월에 공포한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2010년으로 예정된 상속세 폐지 관련 장기정책방향이 정해졌다가 다시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유산세를 2011년부터 다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완화 방침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경제 활력의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의 상속 및 증여 과세 방향에서도 이러한 세제완화 기조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표준을 1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8%에서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1년 세제개혁에 의한 2010년 상속세 및 세대생략 이전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까지 적용되는 법률로 후속방안이 없는 한 2011년부터 다시 과거의 법률이 적용된다. 그런데 2006년 상속세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동 감세안은 상속세가 재적용(2011)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과정을 볼 때 상속세의 완전폐지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부담은 완화하려는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 독 일

2008년 12월 5일 독일 연방상원은 상속세개혁법을 승인하였다. 연방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전제로 동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이법은 사망에 의해 또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평가와 그 (세제)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6년 11월 7일 연방조세법원(BFH)의 제청에 따라 당시까지 적용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평가법과 더불어 연방헌법 제3조 제

1항의 평등조항에 위반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로 하여금 늦어도 2008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그로부터 정확히 1년만인 2007년 11월 7일 연방정부는 상속세개혁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부안은 1년 후에 2008년 11월 6일의 대연정협의에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손질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개혁법(안)은 2008년 11월 27일 연방하원의 승인을 얻었고, 2008년 12월 5일에는 연방상원의 승인도 얻게 된 것이다.

상속세개혁법은 연방조세법원이 2002년 5월 22일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한 후 야기된 6년여동안의 법적 불안정성에 결말을 지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여전히 많은 법적 문제(특히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핵심가족에 속하지 아니하는 친족은 세율면에 있어서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이 의문시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과연 법원은 개정법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게 될 것인지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우선은 조세행정과 납세의무자 양측이 개정법을 실제 집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영 국

영국은 기업상속에 대한 지원책으로 기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의 의의와 목적은 가족기업과 그들의 자산을 상속과세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유지·계속을 수월하게 하는 데 있다. 영국에서는 신탁(Trusts)에 대한 상속세법상 취급이 불리하게 변화한 후 기업자산공제제도의 도입은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제도가 얼마나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영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적 기초는 Interitance Tax Act 1984(IHTA 1984)이다. 이 법은 27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속세는 사망인의 자산에 대한 종국적 과세이며 증여자에 있어서 증여에 의한 가치손실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게 된다.

영국에서의 상속 및 증여과세에 관련한 평가의 기준은 거래가격, 즉 시가(open market value)이다. 이 원칙을 두 개의 특별규정이 보충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 후 4년 이내에 더 낮은 현실적인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더 낮은 현실적인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와의 관계에서 상속세와의 이중과세가 문제가 제기된다. 생전의 자산이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 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도 과세된다. 왜냐하면 생전의 증여는 납세의무 있는 가치의 처분행위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투자회사에 대한 상속세는 이전될 기업이 전부 또는 주로(wholly-or-mainly) 유가증권, 토지나 건물 또는 단순히 투자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하면, 기업자산공제는 고려되지 않는다. '주로(mainly)'는 원칙적으로 50% 이상이 투자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기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는 IHTA 1984의 제5장 제1절 Section 103~114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자산공제에 대한 대부분의 법원의 결정들은 wholly-or-mainly-test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고 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wholly-or-mainly-test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wholly-or-mainly-test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어려운 정의와 계량화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4) 캐나다

1972년 세계 최초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다. 즉, 재산의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 의제하여 무상이전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배우자간 무상이전에 한해 생존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5) 호 주

1977년부터 1984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 해당자산 처분시 과세하고 증여의 경우 증여를 유상양도로 의제하여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시점에서 과세한다.

최근 주요국의 상속세 폐지 및 완화의 움직임은 특히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이상 가업승계와 관련해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현황과 세제지원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유산취득세형의 대표국가인 독일과 유산세형의 대표국가인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가업승계관련 상속세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의하여 새로이 상증세제를 개편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평가체제와 가업승계세제를 동시에 개편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업승계관련 세제의 특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각 조건을 달

리하는 두 가지 선택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승계후 7년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승계후 10년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전체 사업용 자산의 85%에 대하여 세부담을 제거하되 7년 후의 시점에서 종업원 급여총액이 상속개시점의 급여총액의 65% 미만으로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후자의 경우는 세부담의 전부를 제거하되 10년 후의 시점에서 종업원 급여총액이 상속개시점의 급여총액의 100% 미만으로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다른 나라들과 달리 승계된 가업이 계속 수행되는 것 이외에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결부시킴으로써 가업승계가 창업자 일가의 부의 대물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일정한 공익에 기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기업상속은 사업용 자산이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후계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사업용 자산을 다시 생산성 자산과 비생산성 자산인 이른바 ‘관리자산’으로 나누어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을 생산성 자산이 대부분이 되도록 고려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대상이 기업 자체인 경우는 기업의 현재가치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가제도개혁의 근본취지는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인다. 기업상속과 영농상속을 구별하지 않고 넓게 가업승계의 테두리 내에서 세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구별하는 우리나라의 세제와는 다른 점이다.

영국에서도 가업승계는 사업용 자산의 이전이라는 점이 중요시 되며, 독일과는 달리 유산세방식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업승계에 대하여는 기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를 통해 세부담을 감면하고 있다. 그 요건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자나 피상속인은 당해 이전되는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서 증여시나 상속 개시전 최소한 2년 동안 이용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전 시점에서 재차의 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당해 사업용 자산은 ‘전부 또는 주로(wholly-or-mainly-test)’ 사업목적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업목적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영국의 세제에서도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의 구별이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기업자산공제가 부여되기 위하여 승계된 가업이 일정기간 계속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상속의 경우 수증인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증여가 있는 후 첫 7년 내에 증여자의 사망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이전에 양도하거나 당해 자산이 그 기간 도래전에 중요기업자산이 아니게 되면 기업자산공제는 사후적으로(일부) 소멸하게 된다. 기업자산공제의 범효과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100% 또는 50%의 평가할인이 주어진다는 점에 있다.

IV.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관련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

현행 상속·증여세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증여자가 각자의 취득재산을 상속·증여할 때까지 보유기간에 형성된 자본이득만이 과세되지 않고 모든 가치가 과세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부 주식 및 기타자산 등 일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상속 및 증여세를 폐지하면 자칫 고액자산가들의 조세부담 회피의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과세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 정서상의 문제가 있다. 즉, 상속·증여세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2. 개선방안

가업승계관련 세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국제적 추세로 볼 때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의 경영권이나 가업상속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축적 및 지속적 성장의 저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상속세의 부담은 단기적으로는 조세수입확보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으로 상속세 폐지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의 과세유형이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과세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한 이른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과세권을 남용할 소지도 안고 있다. 또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제도들이 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또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완화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완전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의 전환과 증여과세 후 개발이익에 대한 증여과세 등 비상장주식의 상장시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들의 폐지,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가족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대표적인 중소기업인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족기업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영세기업 수준의 기업만을 가족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가족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과 비교하여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소유구조에 있다. 즉, 가족기업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우에 따라 경영을 하거나 혹은 경영은 타인에게 위탁하는 기업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가족기업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전략적 방향을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창업자나 창업자의 후계자 또는 복수 세대가 경영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인 가족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현황은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개선방안은 단기적 및 중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상속세 폐지 및 축소의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상속세 완화 및 폐지에 대해 세밀하고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상 상속세나 증여세를 바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입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흑자기업인 건실한 가족기업이 계속성을 담보하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세제적 걸림돌을 제거해준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본래 상속세와 증여세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형평을 이루고 부의 집중 방지 및 기회균등과 세수증대에 도입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강화방향의 정책에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상속세의 강화 정책은 부의 세습과 변칙적 상속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 당시 열거주의 과세였던 것이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범위가 변경되었고 이어서 완전포괄주의로 과세범위가 확대 변경되었지만 강화 일변도의 상속세제의 정책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의 동원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일부 국가에서 대안으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대체와 완화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본이득세제로의 개편문제는 평가체계의 발전 및 관련 인프라구축을 전제로 해서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성수·박찬희·김태호, “한국기업 성과급제도의 변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상석·고인곤, “기업가정신과 창업”, 학현사, 2004.
- 조용근, “상속·증여세 실무”, 한국세무사회, 2008.
- 고윤성·백혜원,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2호, 2010.
- 김양호·이만우, “상장주식의 증여 및 증여취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 제20권 3호.
- 남영호, “가족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3호, 2008.
- 남영호·문성주,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성과비교 : 거래소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대한 경영학회지, 제20권 1호, 2007.
- 남영호·문성주, “가족기업 IPO 장기성과에 관한 연구 : 코스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대한 경영학회지, 제20권 5호, 2007.
- 박요한,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4호, 2007.
- 박중수, “상속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6권 3호, 2009.
- 박훈·김태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3권 4호, 2006.
- 심상규·김창수·허영빈,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이익조정 차이와 회계정보 유용성 비교”,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4호, 2009.
- 오명수·김석용·이재성,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모형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3집, 2008.
-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타당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7집, 2009.
- Royston Greenwood, 2003. "Commentary on: Toward a theory of agency and altruism in family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 Tai-Yuan Chen and Suresh Radhakrishnan, 2007. "Corporate disclosures by family firm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 Thomas M. Zellweger, and Kimberly A. Eddleston, and Franz W. Kellermanns, 2010. "Exploring the concept of Familiness: Introducing family firm identity".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1.